

# 「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 시행지침」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시행지침 조항의 법 적용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명확화
  -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의 인용 조문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철도안전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2) 행정예고 : 2023. 3. 17. ~ 2023. 4. 7.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43호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62조제5항, 제66조제4항, 제71조제6항에 따른  
「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39호,  
2021. 12. 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

「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 시행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항 중 “제63조제2항”을 “제28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  
제2조의1제1호 중 “제63조제2항”을 “제28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